

安定基金制度의 運用現況



金 東 源

〈動資部油政課·行政事務官〉

1. 安定基金의 性格 및 法的 根拠

우리나라는 油價를 政府가 결정하고 있는 完全統制價格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各精油会社마다 原價構造가 相異한데도 政府가 획일적인 油價를 결정하는데는 다소의 無理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原價中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原油價格이 多元化되어 있어 그 質에 따른 합리적인 價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政府가 그냥 획일적인 油價를 결정 告示하게 되면 質에 비해 싼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会社는 비싼 原油를 도입하는 会社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暴利(Windfall Profit)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利益이 발생하는 会社는 정상적인 稼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缺損이 커지는 会社는 자동적으로 稼動을 줄이게 되어 國家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全體需給上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가 各精油会社의 原價中 최소한 原油價格部門에 있어서만은 各精유회사별로 差異가 발생하지 않도록 政府가 개입하여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한 것이 바로 安定基金인 것이다. 물론 自由競爭體制下에서 政府가 人爲적으로 原油價格을 平準化시킨다는 것은 여러가지 論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특히 79년 이후의 제 2차 石油波動時 우리가 겪어야 했던 物量不足事態下에서는 所要原油를 최대한 확보하여 國內 油類需給蹶跌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課題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原油를 비싸게 도입하는 것이 精油会社의

責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原油의 價格을 결정한 것은 原油의 質이 아니라 各產油國의 政策에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비싼 原油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中斷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政府가 油價를 결정하고 있는 限, 그리고 원활한 原油도입을 위해서는 各精油会社의 原油導入費用에서는 精유회사에 損失이 발생하게 해서는 困難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安定基金의 성격에 대해서 域者는 이를 租稅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外形上 단순하게 보면 이러한 安定基金은 油價에 轉嫁되어 결국 소비자로부터 徵收된다는 점에서 租稅와 유사한 性格을 가지고 있으나, 租稅는 一般歲入 予算에 반영되어 不特定의 用途로 사용되지만 安定基金은 原油를 싸게 도입하는 精유회사로부터 徵收하여 비싸게 도입하는 精油会社에 補填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轉嫁되지 않는 實質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租稅와는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原油를 배럴당 3\$에 도입하는 精유회사와 1\$에 도입하는 회사가 있어 全体的으로는 平均 2\$의 原油導入價가 되었다고 假定할 때 國內油價는 배럴당 2\$로 하되 1\$에 도입하는 회사로부터 1\$을 徵收하여 3\$로 도입하는 会社에 補填하는 것이 安定基金의 運用內容인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安定基金을 租稅로 理解하려는 傾向에 대해 이는 事實과 다른 것임을 明確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 이다.

이와같은 安定基金의 설치 및 運用은 石油事業法 第17條의 2項(基金의 設置), 第17條의 3項(基金의 造成), 第17條의 4項(基金의 用途), 第17條의 5項(基金의 管理) 및 第17條의 6項(基金의 借入)의 規定에 그 根拠를 두고 있다. <참조: 表1> 그리고 同法의 시행을 위하여 石油事業法 施行令에 關係規定이 있으며, 韓國石油開發公社의 石油事業基金管理 運用規程은 同基金의 管理運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래 石油事業法上 安定基金이라는 用語는 없다. 대신 石油事業基金이라는 用語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基金의 用途로서 同法 第17條의 4(基金의 用

途)에는 첫째, 石油의 비축 및 저장시설, 둘째, 석유개발사업, 셋째, 原油의 差等價格과 석유제품가격의 平準化로 인하여 石油精製業者에게 발생한 損失의 補填, 넷째,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에너지資源開發事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石油事業法 施行令에는 이를 보다 具體化하여 第9條의 4(수입금의 징수비용 및 징수방법)에는 石油事業基金을 징수할 때 그 使用目的에 따라 석유비축사업 推進을 위한 財源확보를 위해서 “備蓄基金”을 징수하고, 國內油價의 安定관리를 위한 “安定基金”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安定基金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石油事業基金에는 備蓄基金과 安定基金의 두종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安定基金에 대해서만 言及하고자 한다.

2. 安定基金의 運用現況

현재 安定基金은 動資部告示 第81-188号(81. 4. 27)에 따라 도입되는 原油에 대해 3.50\$/B(適用換率: 船積後 30日되는 날의 換率)를 징수하고 있으며, 安定基金의 사용은 油價反映 基準原油價를 초과하여 原油를 高價로 도입할 경우 그 高價差額을 補填하는 것과 製品導入時에 발생한 損失을 보전하는데 사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告示上 油價反映 基準原油價는 31.44\$/B(적용환율 677.80원/\$)이나 금번 81. 11. 29 油價調整에 따라 32.92\$/B(적용환율 69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原油를 高價로 도입할 경우의 補填金額은 <實導入原油價格×船積後30日 되는 날의 환율-基準原油價>로 하고 있으며, 製品導入 損失額 補填金額도 <製品의 輸入價格×선적후 30일 되는 날의 환율-國內 稅前工場渡價格>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製品導入 損失補填은 動資部長官의 사전승인을 받아 行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安定基金은 계속적으로 運用 되어가고 있으며, 다른 基金과는 달리 어떤 目標額을 정해 놓고 그 목표액에 달할 때까지 基金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徵收·補填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81년 10月末 現在 安定基金의 運用狀況은 <表2>와 같다.

石油事業基金에 관한 石油事業法 關係条文

第17條의2 (基金의 設置) 石油의 需給 및 價格安定과 石油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17條의3 (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石油輸入 또는 石油製品販賣時에 石油輸入業者 또는 石油精製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2. 國際原油價格의 顯著한 差異로 인하여 國內石油精製業者가 取得한 差等利潤중에서 徵收하는 收入金
3. 第17條의 6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②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比率 및 徵收方法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7條의4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다.

1. 石油의 備蓄 및 貯藏施設
2. 石油開發事業
3. 原油의 差等價格과 石油製品價格의 平準化로 인하여 石油精製業者에게 發生한 損失의 補填
4.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에너지資源開發事業

第17條의5 (基金의 管理): 생략

第17條의6 (基金의 借入): 생략

3. 安定基金의 設置·沿革

이와같은 安定基金을 본격적으로 運用하기 시작한 것은 79年 7月 10日 이후의 일이었으나 石油

事業法上 安定基金의 設치근거가 마련된 것은 77年末의 일이었다. 이처럼 石油事業法에 安定基金의 設치근거가 1977年에 규정되었던 理由는 當時에 벌써 原油價가 二元化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表 2)

安定基金 収支現況

(81. 10. 31 通관불량기준)

(단위 : 100 萬원)

통관月別	80년이월	징 수	補 塡				殘 額	
			基準價差	換 差 損	장 려 金	기타지원		
80. 12	25, 815	1, 952	15, 268				15, 268	12, 499
81. 1		18, 710	27, 614				27, 614	3, 595
2		16, 498	20, 078				20, 078	15
3		21, 723	58, 165	18, 528	47, 030	28, 624	152, 347	△ 130, 609
4		17, 692	39, 478				39, 478	△ 152, 395
5		34, 427	32, 252				32, 252	△ 150, 220
6		29, 930	23, 356				23, 356	△ 143, 646
7		32, 095	31, 448				31, 448	△ 142, 999
8		29, 980	34, 607				34, 607	△ 147, 626
9		30, 867	23, 483				23, 483	△ 140, 242
10		32, 872	30, 429				30, 429	△ 136, 306
81. 1 ~ 10	예치이자	1, 493						
計	25, 815	268, 239	336, 178	18, 528	47, 030	28, 624	430, 360	△ 136, 306

(表 3) 77年 以後의 原油價 變動 狀況

油種別	API	77. 1. 1	7. 1	78. 1. 1
A-L	34°	12. 09\$/B	12. 7038\$/B	
A-M	31°	11. 69\$/B	12. 3225 "	
Kuwait	31°	12. 37\$/B	12. 27\$/B	12. 22\$/B

1974年의 第1次 石油波動이 끝난 이후 國際原油市場에서는 한동안 供給過剩 現상과 더불어 原油價格의 安定推勢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7年 1月 1日부터 사우디 아라비아가 輕質油原油價格을 12. 09\$/B, 中質原油價格을 11. 69\$/B로 결정한데

(表 4) '77~'78의 各精油會社 部門別 損益

(단위 : 百萬元, () 내는 稅后利益)

年度別	社別	部 門 別			備 考
		精油部門	其他部門	計	
77	油公	△ 13, 856	10, 672	△ 3, 184 (△ 3, 215)	쿠웨이트 60%, 사우디 17. 5% 이란 : 20. 6%, 기타 1. 9%
	湖油	3, 550	2, 754	6, 304 (3, 792)	사우디 100%
	京仁	△ 1, 598	4, 556	2, 958 (1, 903)	사우디 80. 3%, 카프지 4. 8% 쿠웨이트 11. 7%, 기타 3. 2%
78	油公	14, 331	13, 686	28, 017 (18, 229)	쿠웨이트 55. 2%, 사우디 30. 7% , 이란 14. 1%
	湖油	8, 257	3, 250	11, 507 (6, 019)	사우디 100%
	京仁	1, 736	5, 328	7, 064 (3, 751)	사우디 76. 1%, 카프지 20. 1% 기타 3. 8%

대해 쿠웨이트는 自國產原油價格을 12. 37\$/B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쿠웨이트 原油는 사우디 中質油(A-M)과 API度數도 비슷한 31° 일뿐만 아니라 硫黃含量도 多少 많은 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쿠웨이트 原油가 사우디 中質油價格에 비해 약간 싼 것이 正常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쿠웨이트 原油의 高價維持는 原油價의 二元化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와 같은 物量 過剩 상황하에서는 이와같은 原油價二元化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77年 7月 1日부터 사우디는 輕質原油(A-L)價格을 12.7038\$/B, 中質原油(A-M)價格을 12.3225\$/B로 引上한데 比해 쿠웨이트는 오히려 12.27\$/B로 原油價를 引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쿠웨이트는 原油價格을 이렇게 引下했음에도 여전히 販賣不振을 면치 못하게 되자 78年 1月 1日부터 다시 原油價를 5¢/B씩 引下하여 판매함으로써 國際原油市場은 다시 原油價一元化時代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表3參照>

한편 이와같은 原油價二元化 상황에 따라 사우디原油를 사용하는 精油会社와 쿠웨이트原油를 사용하는 精油会社間에 상당한 損益差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不過 6個月間의 原油價二元化 상황이었지만 1977年中 쿠웨이트原油를 주로 사용하였던 大韓石油公社는 精油部門에서 138億5600萬원의 缺損을 나타내는데 비해서 사우디原油를 使用하던 湖南精油는 稅前으로 35億 5000萬원의 이익을 시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損益差는 반드시 原油價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原油價 相異가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原油價가 一元化되었던 1978년에는 油公이 精油部門에서 稅前으로 143億 3100萬원의 利益을 보인 反面 湖南精油는 精油部門에서 82억 5700萬원의 利益을 나타내는데 불과하였다는 점을 勘案하여도 確實한 것이다. <表4 參照>

따라서 原油價 측면에서의 미미한 차이라도 精油会社의 全体損益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므로 政府는 77年末 石油事業法을 改正하여 이러한 原油價 差異에 따라 싼 값으로 原油를 도입하는 精油会社에 暴利가 발생할 경우 그 利益의 一部를 基金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多幸히 78년부터는 다시 完全한 原油價一元化 상황이 지속되어 이러한 安定基金을 運用할 機會는 없었지만 第2次 石油波動의 발생에 따른 原油價 多元化 현상에 따라 上述한 바와 같이 1979年 7月부터 본격적인 安定基金의 運用이 개시된 것이다.

4. 그간의 安定基金 運用 概要

(가) 前述한 바와 같이 安定基金制度가 본격적으로 運用되기 시작한 것은 1979年 7月이후부터였다. 78年末의 이란事態로부터 시작된 第2次 石油波動의 조짐은 79年 1月 1日付로 各國이 原油價를 平均 5%씩 引上함으로써 본격화되었으며 이어서 79年 2月 20日부터 쿠웨이트가 프리미엄을 부과함으로써 原油價 多元化의 막을 열어 놓았다. 政府는 이에 따라 79年 3月 7日 國內油價를 平均 9.5%引上 함으로써 이에 対応하였으나 그 후 各國의 原油價는 계속적으로 急騰함과 동시에 프리미엄 賦課가 一般化되어 더이상 統一的인 國內油價管理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79年 7月 10日 國內油價를 또다시 59% 引上하면서 上記 石油事業法의 根拠에 따라 安定基金制度를 運用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나) 79年 7月 10日의 國內油價 調整內容 및 安定基金의 運用內容

政府는 79年 7月 10日 國內油價를 59% 引上하였음은 앞서서도 言及한 바 있으며 이때의 基準原油價는 23.50\$/B로 반영하였다. 물론 當時의 國內導入平均價格은 16\$/B 水準이었으나 各國의 原油價가 垂直上昇하던 推勢였기 때문에 이를 事前에 反映하지 않고 原油價가 상승될때 마다 國內油價를 調整할 경우 1個月에 한번씩 油價를 調整하는 事態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狀況이었기 때문이다. 아문은 23.50\$/B을 기준으로 하여 油價를 調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原油價는 79年 11月 1日부로부터 平均 24\$/B을 超過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편 政府는 7月 10日 油價를 調整하면서 油價

<表5> 安定基金에 依한 精油会社 補填実績('79)

(單位：億圓)

區分	社別					計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1) 上半期 原油價差額	75	-	2	-	-	77
(2) SPOT 原油導入損失	-	9	34	-	-	43
(3) 製品導入損失	40	35	17	-	-	92
(4) 低價原油인센티브	-	136	-	-	-	136
(5) 輸送費差額	-	-	51	-	-	51
(6) 原油質差異基準價格調整	-	-	-	-	8	8
計	115	180	104	-	8	407

註：原油高價差額 補填 除外

에 반영한 23.50\$/B 이하로 原油를 도입할 경우 그 差額을 全額 基金으로 징수토록 하고 대신 原油 價格이 23.50\$/B 이상으로 상승될 경우 그 差額을 全額 安定基金에서 補填토록 하였다. 그밖에 安定基金을 징수할 때에는 各精油会社의 損益을 감안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安定基金에 의한 精油会社의 損益調整 기능을 맡도록 한 것도 커다란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各精油社는 79年 10月 末까지는 上記 基準原油價인 23.50\$/B 이하로 原油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基準 原油價와의 差額을 全額 納付하였으며, 한편 11月 부터는 原油도입가격이 基準原油價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그 高價 差額을 基金에서 補填하게 되었다. 한편 79年度의 各 精油会社의 損益을 조정하기 위하여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安定基金으로 總 407億원을 精油社의 損失補填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 80年 1月 29日의 国内 油價調整 內容 및 安定基金의 運用內容

계속적인 原油價上昇과 80. 1. 12의 換率 변동에 따라 政府는 또다시 80年 1月 29日을 기하여 国内油價를 稅前工場渡 기준 59.43%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의 基準原油價는 28.80\$/B이었으며 이때의 安定基金 運用내용도 從前과 같이 低價 差額을 徵收하고 高價差額을 補填하는 制度를 계속 運用하였다. 특히 이때부터 變動換率制 실시에 따른 換差損을 감안하여 低價差額徵收時에는 $(28.80\$/B \times 582.9\text{원}/\$ - \text{실도입原油價} \times \text{船積后 30日 되는날의 환율})$ 만큼을 徵收토록 하였으며, 高價差額補填時에도 이와같은 요령에 의해 補填을 실시토록 하였다.

(라) 80年 8月 24日의 国内油價調整內容 및 安定基金의 運用內容

政府는 그간의 原油價 상승 및 換率 상승등을 감안하여 80年 8月 24日 国内油價를 稅前 工場渡 基準으로 14.72% 引上 하였다. 이때의 基準 原油價는 當時의 国内原油導入 平均價格인 30.58\$/B이었으며 基準換率は 620.30원/\$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定額安定基金을 1\$/B씩 反映함으로써 계속적인 換率上昇 等 其他 필요한 用途

에 充當토록 하였다.

이때의 特徵으로서 종전까지는 基準 原油價와의 差額을 基金으로 징수하였으나 이때부터는 差額과 동시에 定額을 징수토록 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從前까지는 原油價가 상승될 것을 前提로하여 基準原油價를 定하였으나, 80. 8. 24부터는 이와같은 事前予測 反映을 지양하고 대신 現在의 原油導入平均價格을 基準原油價로 하여 油價에 反的함으로써, 油價 引上에 따른 物議를 최대한 排除토록 한 것은 国内油價管理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進展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의 安定基金 運用 내용은 基準原油價를 国内 原油導入 平均가격으로 反映하였기 때문에 低價差額의 징수액 및 高價差額 補填額은 원칙적으로 一致하게끔 구성되었으나, 실제로는 船積后 30日까지의 換差損을 補填토록 하였기 때문에 基金收支는 상당한 惡化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不足分은 별도로 징수하는 安定基金 1\$/B을 잠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 80年 11月 19日의 国内油價調整內容 및 安定基金의 運用

계속되는 原油價 상승 및 換率상승을 반영하여 政府는 또다시 80年 11月 19日 国内油價를 稅前工場渡 基準 12.56% 인상하였고, 이때에도 8.24 油價調整時의 原則에 따라 基準原油價는 당시 国内原油導入 平均가격인 31.97\$/B을, 基準換率は 658.30원/\$를 반영하였으며 基金의 運用內容도 8.24 調整時와 동일하였다. 다만 이때에는 그간의 基金

<表6> 安定基金에 의한 精油会社 補填実績('80)

(단위: 억원)

区分	油公	湖油	京仁	双龍	極東	計
(1)USANCE換差額(90日分)	277	228	47	40	13	605
(2)低價原油인센티브	-	630	-	-	-	630
(3)新設精油社 支援	-	-	-	256	-	256
(4)原油導入先多邊化支援(輸送費差額)	-	-	7	-	-	7
(5)備蓄施設促進	-	-	-	11	13	24
(6)原油質差異基準價格調整	18	-	17	46	14	95
計	295	858	71	353	40	1,617

註: 原油高價差額 補填除外

不足分을 감안하여 定額 安定基金을 1.50\$/B 로
引上 反映하여 基金收支惡化를 防止토록 하였다.
한편 政府는 油價에 반영하기 어려운 各 精油会社
의 缺損 補填을 위하여 80年度 基金精算을 實施하
였는 바 그 內容은 <表6>과 같다.

(바) 81年 4月 19日의 油價調整內容과 安定
基金의 運用

政府는 越冬期中의 油價引上을 避하기 위하여 그
간 引上要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引上時期를 지연
시켜오다가 81年 4月 19日을 기하여 또다시 国内
油價를 稅前工場渡 價格基準으로 15.0% 引上하고
몇 가지의 制度改善을 단행하였는 바 그 주요한 內容
은 첫째, 油價反映 基準 原油價를 国内에서 가장
低價로 原油를 導入해오는 精油会社의 原油價格
(31.44\$/B)으로 하고, 둘째, 대신 定額安定基
金을 3.50\$/B로 引上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制
度를 변경한 이유는 從前과 같이 国内原油導入 平
균가격으로 基準原油價를 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低價差額을 징수한 財源으로 高價差額을 補填한다
는 것은 결국 低價原油導入社의 利益으로 高價原
油 導入社의 缺損을 補填해 주는 결과가 되어 自由
競争을 原則으로 하는 市場原理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制度改善에 따라 安定基金은 완전히 定
額으로 징수되게 되어 從前과 같은 差額의 징수概
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安定基金
은 당초 差額徵收에서부터 시작하여 差額및 定額
의 同時徵收過程을 거쳐 현재의 定額徵收로 바뀌어
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安定基金의 사용 用途에 있어서도 당초 高
價差額補填과 동시에 精油会社의 缺損補填을 위해
서 사용되어 왔으나, 4. 19 油價調整時의 制度改
善 內容에 따라 安定基金에 의한 精油社 缺損補填
도 廢止 됨으로서 基金의 運用이 점차 單純化되어
가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5. 그간의 安定基金 運用上的
問題點

(가) 그간 安定基金 運用上的 問題點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國際原油 市場에서의 原

油價 多元化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原油價 平準
化制度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위해 安定基金 制度
를 設置, 運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安定基
金利率은 우리나라가 第2次 石油波動을 넘기는데
에 至大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運用上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노출시킨 것도 또한 사실이
다. 무엇보다도 原油價平準化 制度를 실시함으로
해서 低價로 原油를 도입하는 会社와 高價로 原油
를 導入하는 会社가 差異가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自由競争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體制
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 問題된다. 특히 最近과
같이 國際原油市場에서의 物量過剩 현상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하층 더 심각하게 提起되는 것은 당
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安定基金으로 精油会社의
缺損을 補填해 주는 데 따른 一般國民의 의혹도 問
題가 되지만, 賣出額이 6兆원이 넘는 精油会社의
損益을 政府가 直接 檢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나 하는 점도 큰 問題가 되는 것이다.

(나) 81年 11月 29日의 油價調整 內容과
向後的 基金 運用方向

이러한 狀況下에서 政府는 지난 10月の OPEC
會議結果에 따라 또다시 国内油價를 稅前工場渡 價
格基準 6%, 消費者價格基準으로는 5.7%를 引上
하였다. 금번 11월 29일 油價調整 方式은 基本的으
로 지난 4. 19 調整時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調整
되었으며, 이에 따라 基準原油價는 国内最低價 原
油導入社의 導入平均價格인 32.92\$/B, 基準換率
은 690원/\$, 그리고 定額安定基金으로는 2.30\$
/B가 反映되었다.

이와 동시에 政府는 그간의 安定基金 運用上的
문제점을 補完하기 위하여 몇 가지 획기적인 制度
改編을 단행하게 되었다. 첫째, 原油價 平準化 制
度는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싼값으로 原油를
導入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비싸게 原油를 導
入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油價에 반영한 安定基金額 2.30\$/B中 실
제로는 2.00\$/B씩만 安定基金으로 징수하는 대신,
비싸게 원유를 도입한 경우에는 一定한 率의 페널
티를 부과함으로써 싸게 原油를 導入하는 경우 자
동적으로 30¢/B만큼씩 인센티브가 支給될 수 있
도록 制度化하였다.

한편 民間主導型 經濟運用 體制에 발맞추기 위하여 油價의 自律化를 적극 檢討기로 하였으며, 原油 價가 多元化되어 있을 동안은 政府가 현재와 같이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실시하되 精製費 부분은 自律化를 誘導해가며, 尙后 原油價가 一元化 될 때에는 原油價 마저도 精製會社의 自律決定에 맡길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것이다. 둘째, 安定基金을 運用

하는 경우에도 이의 運用을 엄격하게 制限하도록 하여 安定基金으로는 高價差額 補填외에는 質에 따른 比例值 賦与와 原油導入先 多辺化를 지원하기 위한 輸送費 補填만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基金運用을 單純化시킴으로써만이 安定基金에 대한 國民의 일부 誤解 餘地를 事前에 예방할 수 있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

□ 海外經濟短信 □

日本企業들의 外國 신뢰도

日本 經濟新聞은 최근 日本의 100大 企業을 대상으로 세계 76개국의 海外投資 및 貿易 상대국으로서의 신뢰도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위험도가 적은 나라로는 지난

해에 이어 美國이 1위를 차지했고, 가장 위험한 나라는 아프리카니스탄, 이란, 레바논 등으로 나타났다.

順位		國家	点数	順位		國家	点数
1981	1980			1981	1980		
1	1	United States	8.99	39	46	Chile	4.68
2	2	West Germany	8.68	40	44	Hungary	4.64
3	3	Switzerland	8.34	40	36	Nigeria	4.64
4	4	Canada	8.30	42	41	Czechoslovakia	4.62
5	5	Netherlands	7.84	43	48	Algeria	4.59
6	6	Australia	7.81	44	41	Panama	4.58
7	6	Belgium	7.67	45	39	Argentina	4.48
8	9	Britain	7.49	46	43	Ecuador	4.32
9	8	France	7.36	47	50	Egypt	4.28
10	14	New Zealand	7.33	48	47	India	4.27
11	10	Singapore	7.30	49	49	Romania	4.23
12	11	Sweden	7.24	50	-	Sri Lanka	4.15
13	13	Norway	7.21	51	52	Peru	4.08
14	12	Austria	7.08	52	54	Libya	3.92
15	17	Denmark	6.96	52	55	Kenya	3.92
16	16	Hong Kong	6.76	54	51	Israel	3.90
17	19	Malaysia	6.26	55	53	Ivory Coast	3.80
18	21	Saudi Arabia	6.14	56	45	Iraq	3.68
19	22	Taiwan	6.07	57	57	Burma	3.61
20	20	Ireland	6.06	58	61	Liberia	3.57
21	25	Kuwait	5.99	59	58	Pakistan	3.36
22	22	Spain	5.96	60	56	Bolivia	3.10
23	18	Mexico	5.95	61	65	Mozambique	3.08
24	29	Italy	5.88	62	59	Syria	3.06
25	26	Venezuela	5.67	63	63	Ghana	3.05
26	15	United Arab Emirates	5.62	64	-	Poland	3.03
27	31	Indonesia	5.61	65	66	Sudan	2.88
28	27	Greece	5.55	66	62	Bangladesh	2.85
29	32	South Korea	5.54	67	73	Cambodia	2.73
30	27	Soviet Union	5.44	67	69	Turkey	2.73
31	37	Portugal	5.29	67	70	Congo	2.73
32	35	Thailand	5.25	70	68	Vietnam	2.67
33	30	Brazil	5.23	71	72	Zaire	2.60
34	40	South Africa	5.21	72	67	North Korea	2.57
35	32	China	5.05	73	70	Ethiopia	2.39
36	24	Philippines	5.01	74	64	Lebanon	2.33
37	34	East Germany	4.97	75	73	Iran	2.19
38	38	Colombia	4.71	76	75	Afghanistan	1.78